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미 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7.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필요시설을 확충하여 성공적으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개최하고 국내외 주요경기 유치기반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건립

2017. 3월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기부채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 승인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부족해 민간과 구미시의 공동 건립으로 변경, 준공하여 민간투자분은 기부채납 받고자 함.

○ 구르미공원 조성 및 도개 행복나눔센터 신축

도개면의 중심지에 지역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건강 관리실, 동아리방, 다목적실 등을 갖춘 행복나눔센터 신축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다목적행사마당, 소통쉼터 등 구르미공원을 복합적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면소재지의 구심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함.

○ 구미 치매안심센터 신축

국정과제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치매 국가 책임제) 관련으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신설 205개) 및 치매안심병원 확충 추진 중이며, 치매 어르신을 등록하여 1: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양 부담감을 줄이고자 함.

○ 선산 치매안심센터 신축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일환 전국 보건소당 치매안심센터 1개소 설치 이행과 관련되며, 선산지역 늘어나는 노인과 치매환자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자 조기검진부터 체계적 관리·지원함으로써 잠재적 질환자 발견하고 환자 가정의 삶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 구미하수처리장은 2010년이후 점차적인 하수량 증가로 시설용량 ($Q=330,000\text{m}^3/\text{일}$)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목표연도 2020년 유입하수량이 $380,773\text{m}^3/\text{일}$ 로 시설용량 116% 초과하고 기존부지 협소로 부지 내 증설이 어려워 용량 초과분 $55,000\text{m}^3/\text{일}$ 처리를 위한 별도의 하수처리시설 신설이 필요함.

- 하수처리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우리시 재정여건상 조속한 시일내 건설이 어려워 재정부담 완화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하수처리장 신설을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낙동강수질 보전에 힘쓰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체육시설 증축》

- 위 치 :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외 170필지
- 대 상 : 토지 15,096m²(4,567평)
건물 연면적 2,000m²(605평)
- 기준가격 : 토지 1,819백만원(공시지가)
건물 2,000백만원(시설비)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주요시설 : 시민운동장 캐노피, 엘리베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 위 치 :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외 170필지
- 대 상 : 건물 지하1층/지상7층 연면적 18,100m²(5,475평)
- 기준가격 : 43,930백만원(건축비)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주요시설
 - 지하 : 전기·기계실
 - 1 층 : 점도·레슬링장, 주차장
 - 2 층 : 로비, 사무실, 볼링장
 - 3 층 : 다목적체육관, 관람석
 - 4 층 : 강의실, 문화카페
 - 5~7층 : 실업팀 숙소, 다목적실

□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건립

《당 초 ; 기부채납》

- 위 치 : 구미시 원평동 460-4, 460-5
- 대 상 : 건물 지상3층 연면적 1,000m²
- 기준가격 : 2,300백만원(삼성전자임직원 지정기탁금)
- 사업기간 : 2016년 ~ 2017년
- 주요시설
 - 1층 : 다목적가족체험장(요리실), 맘카페, 사무실
 - 2층 : 상담실, 어린이도서관, 언어발달실
 - 3층 : 다목적강의실 등
- 건 축 주 : 구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변 경 ; 기부채납, 신축》

- 위 치 : 구미시 원평동 460-4, 460-5
- 대 상 : 건물 지상3층 연면적 989.82m²
- 기준가격 : 3,400백만원
 - 기부채납(민간) : 2,300백만원 ※ 삼성전자임직원 지정기탁금
 - 건축비(시비) : 1,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18년
- 주요시설
 - 1층 : 다목적가족체험장(요리실), 맘카페, 어린이 북카페, 사무실
 - 2층 : 상담실, 언어발달실, 다목적강의실
 - 3층 : 자료실, 창고, 기계실
- 건 축 주 : 구미시건강가정지원센터, 구미시

□ 구르미공원 조성 및 도개 행복나눔센터 신축

《구르미 공원 조성》

- 위 치 :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00-6외 12필지
- 대 상 : 토지 5,560m²(1,682평) ※시유지 1필지 매입 제외
시설 5,632m²(1,703평)
- 기준가격 : 토지 332백만원(공시지가)
시설 780백만원(시설비)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주요시설 : 행복나눔센터, 주민행복마당, 바이크스테이션, 주차장 등

《도개 행복나눔센터 신축》

- 위 치 : 구미시 도개면 궁기리 800-6외 12필지
- 대 상 : 건물 지상4층 연면적 856.5m²(259.5평)
- 기준가격 : 2,080백만원(건축비)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주요시설 : 건강관리실 및 관리사무실(1층), 다목적공간, 동아리실 등(2층), 계단실(3층), 전망대(4층)

□ 구미 치매안심센터 신축

- 위 치 : 구미시 지산동 179외 1필지 (구미보건소 내)
- 대 상 : 건물 지상3층 연면적 730m² (221.2평)
- 기준가격 : 2,000백만원(건축비)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주요시설 : 사무실, 교육실, 가족카페, 프로그램실, 상담실, 검진실 등

□ 선산 치매안심센터 신축

- 위 치 :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44-1번지 (선산보건소 내)
- 대 상 : 건물 지상2층 연면적 585m²(177평)
- 기준가격 : 1,327백만원(건축비)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
- 주요시설
 - 1층 : 가족카페, 프로그램실, 로비
 - 2층 : 사무실, 검진실, 상담·교육실

□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구미시 오태동 173외 51필지
- 대 상 : 토지 66,545m²(20,130평)
건물 지하2층 / 지상2층 연면적 5,414m²(1,637평)
하수처리시설 1식(시설용량 55,000m³/일)
- 기준가격 : 85,500백만원
 - 토지 2,900백만원(공시지가)
 - 시설 82,600백만원(시설비)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55건	49,549.32	57,668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47건	20,656	2,151
	2.기부 채납	토지 건물 기타	1건	989.82 × 23/34	2,300
	3.기타 취득	토지	6건	989.82 × 11/34 22,271.5	52,437
		건물 기타	1건	5,632	780
처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회계명 : 하수도특별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3건		85,500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기부 채납	토지 건물 기타	1건 1건 1건	66,545 5,414 1식	2,900 82,600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 자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재산구분	소 재 지	수 량(m ²)					
총계			49,549.32	57,668				
소계			8,112	997				
취득	토지	광평동 219-2	380	46	2018~ 2020년	체육시설증축 및복합스포츠 센터 신축	한국농어촌공사	매입
	"	광평동 219-5	171	21	"	"	한국농어촌공사	"
	"	광평동 221	320	39	"	"	우상열	"
	"	광평동 222-1	19	2	"	"	김기섭,윤광식,김진철	"
	"	광평동 222-5	240	30	"	"	한국농어촌공사	"
	"	광평동 232	62	8	"	"	이병정	"
	"	광평동 234	33	4	"	"	장진건	"
	"	광평동 235-1	91	15	"	"	이연도	"
	"	광평동 235-5	88	11	"	"	송상택,전재영	"
	"	광평동 285-1	43	5	"	"	한국농어촌공사	"
	"	광평동 814-25	988	121	"	"	국(건설부)	"
	"	광평동 814-26	6	1	"	"	국(건설부)	"
	"	광평동 814-27	17	2	"	"	국(건설부)	"
	"	광평동 814-28	2,434	298	"	"	국(건설부)	"
	"	광평동 814-34	525	64	"	"	국(건설부)	"
	"	광평동 856-9	179	22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광평동 860	83	10	"	"	국(건설부)	"
	"	광평동 862	781	96	"	"	국(건설부)	"
	"	광평동 863	1,384	170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광평동 863-1	41	5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광평동 863-2	174	21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광평동 863-3	53	6	"	"	국(농림축산식품부)	"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소계			29,365.82	50,237				
취득	토지	광평동 863-4	357	44	2018~ 2020년	체육시설증축 및복합스포츠 센터 신축	국(농림축산식품부)	매입
	"	광평동 863-5	39	5	"	"	국(농림축산식품부)	"
	"	광평동 876	10	1	"	"	국(건설부)	"
	"	광평동 산50-4	220	34	"	"	성산여씨도계종중	"
	"	광평동 산54-3	298	35	"	"	지전영	"
	"	광평동 산76	2,391	278	"	"	국(농림수산부)	"
	"	광평동 산76-1	1,152	134	"	"	국(농림수산부)	"
	"	광평동 산77	934	109	"	"	국(건설교통부)	"
	"	광평동 산78	228	26	"	"	국(농림수산부)	"
	"	광평동 산80	228	26	"	"	국(건설교통부)	"
	"	광평동 산80-1	305	35	"	"	국(건설교통부)	"
	"	광평동 산82	656	76	"	"	국(건설부)	"
	"	광평동 산83	166	19	"	"	국(농림수산부)	"
	건물	광평동 277 외 170필지	2,000	2,000	"	체육시설증축	구미시	증축
	"	"	18,100	43,930	"	복합스포츠 센터 신축	구미시	신축
	건물	당초 (2017. 03.14. 가승인)	1,000	2,300	2017년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기부채납	구미시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부 채납
		변경	989.82	2,300	2018년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기부채납	구미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기부 채납
				1,100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신축	구미시	신축
	토지	도개면 궁기리 800-6	208	12	2018년	구르미공원 조성 및 행복나눔센터 신축	국 (기획재정부)	매입
	"	도개면 궁기리 801-6	430	29	"	"	통일교	"
	"	도개면 궁기리 801-7	654	44	"	"	통일교	"

[illegible]

회계명 : 하수도특별회계

(단위 : m², 백만원)

[illegible]

위 치 도

□ 체육시설 증축 및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 소재지 :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외 170필지

위치도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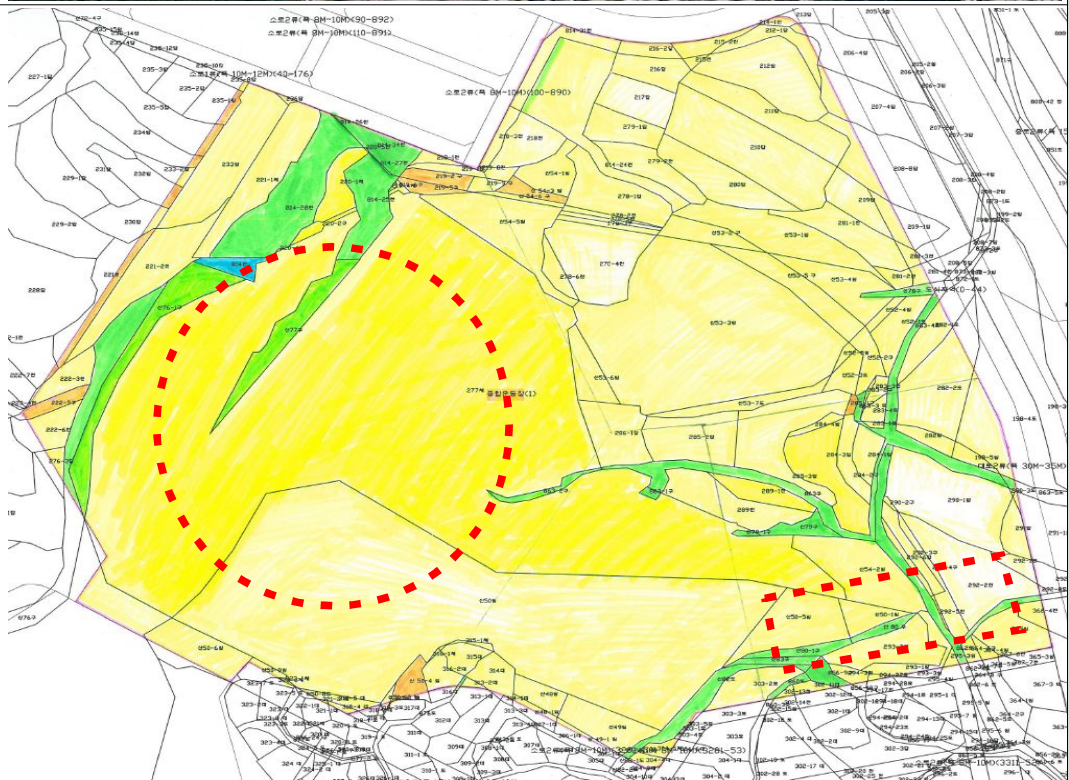
국유지
: 23필

공유지
: 4필

사유지
: 8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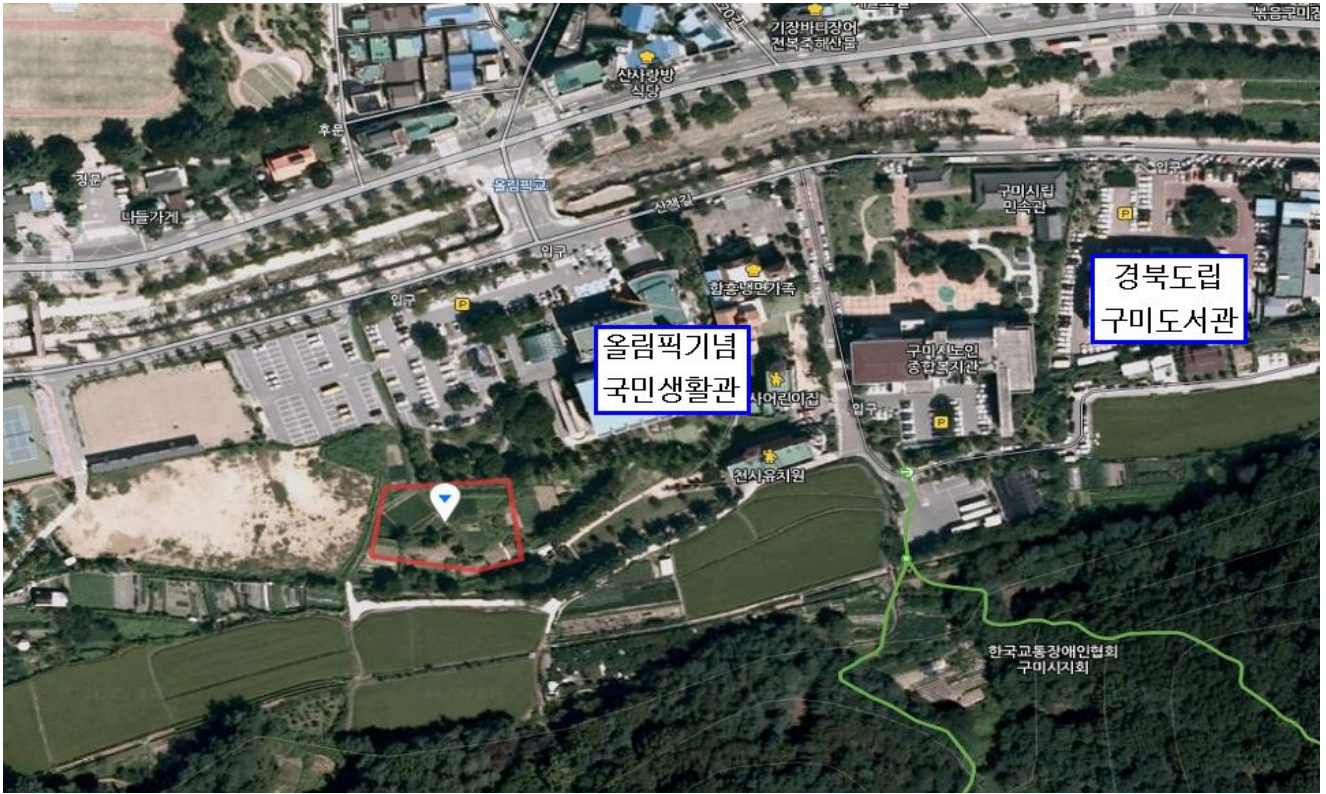
시유지
: 136필

합계 : 171필



□ 구미시 가족행복플라자 건물 건립

○ 소재지 : 구미시 원평동 460-4번지 외 1필지



□ 구르미공원 조성 및 도개 행복나눔센터 신축

○ 소재지 : 구미시 도개면 800-6번지 외 12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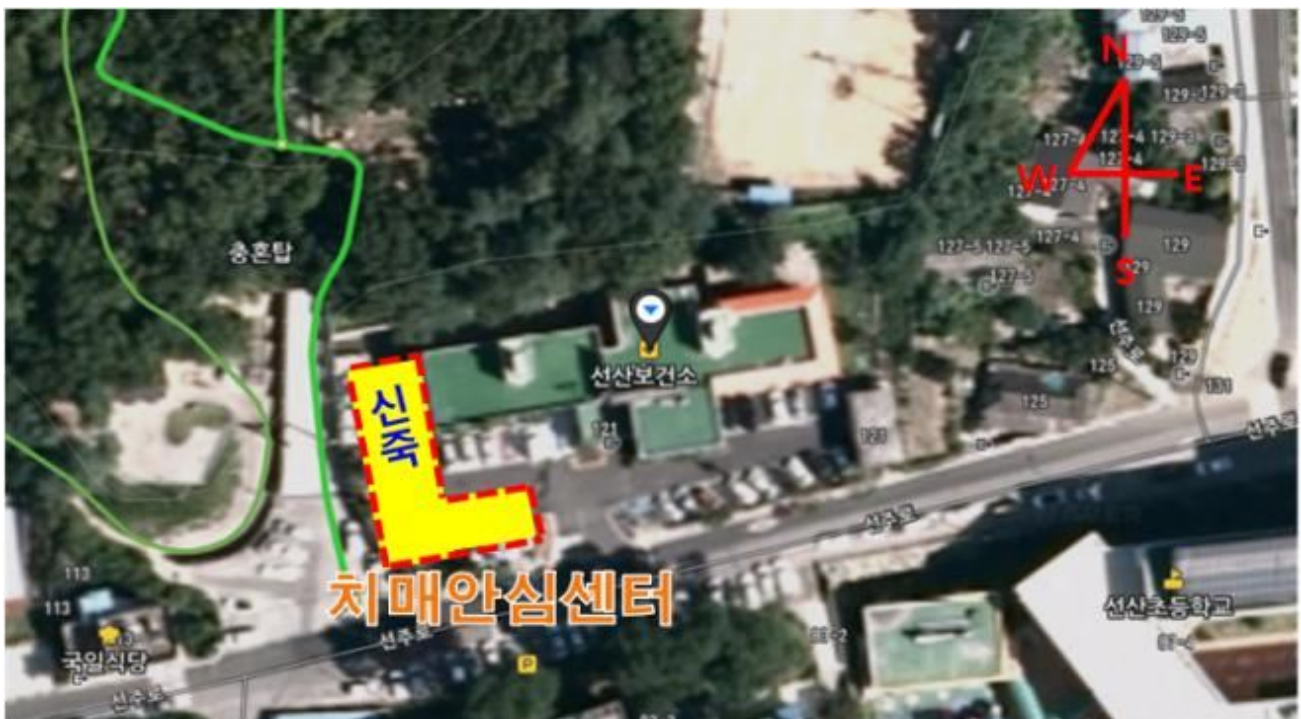
□ 구미 치매안심센터 신축

○ 소재지 : 구미시 지산동 179번지 외 1필지



□ 선산 치매안심센터 신축

○ 소재지 :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544-1번지



□ 중앙하수처리장 신설 민간투자사업

○ 소재지 : 구미시 오태동 173번지 외 51필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 실·과		회 계 과
입 안 자	과 장	이 관 응
	담 당	현 명 숙
	담 당 자	전 유 향 (480-5072)